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21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정성호·김남희·김성환

김영진 • 김정호 • 문진석

민병덕•박선원•박 정

안규백 · 안태준 · 윤후덕

이연희 · 임미애 · 정준호

최기상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기준은 시 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각각 공동부담을 하고 있음.

최근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체예산으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 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법률 제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를 "의료급여수급권자의"로,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를 "관리운영비(이하 "장기요양급여비용등"이라 한다)의 전액을 다음 각 호의기준으로 부담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국가 부담분 :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률에 따른 금액. 이 경우 국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의 총액에 2분의 1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 제1호에 따른 국가 부담분 외의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 및 관리운영비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요양급여비용등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생 략)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대</u>	② <u>의</u>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료급여수급권자의		
<u>의료급여수급권자의</u> 장기요양			
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			
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제40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			
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			
을 포함한다) 및 <u>관리운영비의</u>	관리운영비(이하		
<u>전액을 부담한다</u> .	"장기요양급여비용등"이라 한		
	다)의 전액을 다음 각 호의 기		
	<u>준으로 부담한다</u> .		
<u><신 설></u>	1. 국가 부담분 : 장기요양급여		
	비용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담률에 따른 금		
	액. 이 경우 국가는 장기요양		
	급여비용등의 총액에 2분의 1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u><신 설></u>	2.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 제1		
	호에 따른 국가 부담분 외의		

	<u>금액</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